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급부금(3만 엔・아동 가산)에 관한 공지사항

물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참작하여, 특히 가계에 대한 영향이 큰 주민세 비과세되는 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3만 엔을 지급하는 동시에 해당 세대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에는 아동 1인당 2만 엔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공지사항은 송부 시점에서 지급 후보 세대(심사 결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및 동봉 서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뒷면 오른쪽 서약・동의 사항을 충족하는 세대는 상기 기한까지 수급 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뒷면의 기재사항에 서약 및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 대상	3만 엔	2024년 12월 13일시점 에 나고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2024년도분 주민세 세대원 전원이 비과세인 세대 (단, 주민세가 과세된 자의 세법상 부양 친족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지급 대상 외 (예)・과세자인 부모에게 부양받는 비과세 단신 학생 ・과세자인 자녀에게 부양받는 비과세 부모 세대
	아동 가산	3만 엔 지급 대상 세대 중 18세 이하 아동(2006년 4월 2일생 이후)이 있는 세대 ※ 아동 가산에 대해서는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세대주 ※계좌 입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 소요됩니다.
지급금액		1번에 한함 1세대당 3만 엔+아동 1인당 2만엔
수급 수속		1.신청서를 절단선으로 잘라주십시오. 2.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반신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재는 별지 ‘기재 요령’을 참조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서약·동의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급부금(3만 엔・아동 가산)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약・동의합니다.

- (1)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급부금(3만 엔・아동 가산) (이하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2) 세대원 중에 주민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자가 없습니다.
- (3) 주민세가 과세되어있는 자의 세법상 부양친족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닙니다.
- (4) 세대원 중에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를 받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 (5) 급부금 지급 요건의 해당성 등을 심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나고야시가 필요한 주민기본대장 정보, 세금 정보 등 공부(公簿) 등의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구・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6) 공부(公簿)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7) 나고야시가 지급을 결정한 후 신청서에 미비점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계좌 입금 등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나고야시가 수급자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연락・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본 신청서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나고야시가 간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급부금 지급 후 본 신청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급부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급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 (9)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나고야시가 엄중히 관리하고, 나고야시의 지급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당해 정보를 5년간 보존하는 데 동의합니다.
- (10) 지금까지 다른 시정촌에서 같은 종류의 급부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

신청서 ①~④를 검정펜으로 기재하십시오.
지워지는 볼펜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令和6年度住民税非課税世帯向け 緊急支援給付金（3万円・こども加算）申請書（請求書）

（宛先）名古屋市長
裏面記載の誓約・同意事項に同意の上、申請します。

1 申請・請求者 世帯主の氏名等を記入してください。

世帯主の氏名	申請日	令和7年 4 月 1 日
名古屋 太郎	電話番号	090-1111-1111
住所		

2 支給対象世帯

3	対象世帯員氏名	生年月日
世帯主 (申請者)	名古屋 太郎	平成〇年〇月〇日

3 振込先口座 (1) または (2) のいずれか一つを記入してください。

4 金融機関 (ゆうちょ銀行を除く)				
金融機関名	支店名	分類	口座番号	口座名義 (カナ)
はちまる銀行	なごや支店	1. 普通 2. 当座	1111111111	ナコヤ タロウ

①受取口座を確認できる書類 (通帳やキャッシュカードのコピー) を添付してください。
②世帯主または世帯員以外の口座に振込を希望する場合は、裏面の「4 代理受給を行う場合」への記入が必要です。

※金融機関で口座が作れない等、どうしても口座による受取ができない方は、名古屋市コールセンター ☎050-3135-3260) 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裏面もご確認ください

事務局使用欄 (記入不要)

1 제출 시의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2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지급을 받지 않으실 경우 서명란에 “辞退”(수급 받지 않겠음)라고 써넣고 반송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재 내용에 미비점 등이 있을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으므로 평일 9:00~17:00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되도록이면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3 지급 대상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십시오.

4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계좌를 기재하십시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외의 계좌에 이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뒷면에 “4 대리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도 아울러 기재하십시오. (전화번호는 평일 9시~17시에 대리인과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대리 수급이 가능한 분】

1. 친족

2.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3. 상기 이외(본인과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신원보증 단체 등))

※상기 [3.상기 이외]에 해당하는 분은 콜 센터(☎050-3135-3260)에 연락해 주십시오.

※대리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금융기관(유초은행을 제외)

은행(유초은행을 제외) 또는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할 경우

계좌 명의인

금융기관명・지점명

분류・계좌번호



(2)유초은행

유초은행의 계좌를 지정할 경우

기호・번호

계좌 명의인



※통장 사본(통장 표지를 넘긴 페이지 등) 또는 현금카드 복사 등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